

첨부 공고안 7부

(제 2안)

수신 문화공보실장

제목 신문공고 의뢰

1977년도 전기공사 기능사 1, 2급 지역 경청을 별첨 공고안과 같이
시행코저 하오니, 1개 신문에 공고로록 조속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공고안 7부. 끝.

서울특별시 공고 제 100 호

공고일시	1977. 7. 16	제 100 호
담당	법제국장	법무담당자

1977년도 제 1회 전기기술사 기술사(1,2급) 자격 경쟁 시험 공고

국가 기술자격을 시험령 제 11호의 규정에 의하여 1977년도 전기
공학 기술사 1급 및 2급 자격 경쟁 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77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강구자춘

서울

1. 자격 종류 및 종류

전기공학 기술사 1급, 전기공학 기술사 2급

2. 응시자격

가. 전기공학 기술사 1급: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1) 기술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광역 기술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2) 초급대학, 산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 졸업자와 그 졸업
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3) 전국 경연경기 선민의 2년제 기술 훈련과정의 이수자와 그
이수 예정자 또는 지방기술서 장관이 기술자규 제도 운영 위
원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사 1급의 수론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훈련기관의 기술훈련 과정의 이수자와 그 이수예정자
- (4)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
는 자로서, 광역 기술분야에서 4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5) 광역 기술분야에서 6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나. 전기공사 기술 2급: 다음 조항의 1에 1인자는 자

- (1) 기술사모의 자격이 있는 자
- (2) 산업계(산업계별 제외한다) 고등학교 2년 수료자와 그 수료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3) 제 2호 이력의 고등학교 졸업자와 그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4) 고등학교, 산업계고등학교에 준하는 고등학교 또는 취업 훈련법에 의한 취업 훈련기관에서 1,800시간 이상의 과정의 이수자와 그 이수예정자
- (5) 과학기술직업관이 기술직공제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사 2급의 수훈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훈련기관의 기술훈련 과정의 이수자와 그 이수예정자
- (6) 당해 기술분야에서 6년이상 실무의 종사한 자

3. 경력평면 및 시험과목

가. 경력평면: 전기시험(무관심)

전기시험(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나. 시험과목

(1) 전기공사 기술사 1급

필기: 전기이론, 전기기기, 전압, 전기제도, 유도체산,
전기제도, 전기관계법규, 안전관리

실기: 전기공사 장법

(2) 전기공사 기술사 2급

필기: 전기이론, 전기기기, 전압 전기제도, 유도체산, 전기제도,
전기관계법규

실기: 전기공사 장법

4. 결정결시 및 장소

가. 결거시일: 1977. 9. 18 (일) (장소는 77. 9. 5 시정 우정거시편
예 공고)

나. 결거시일: 1977. 10. 22 - 10. 31. (장소: 및 임정은 결거시일
장부라 공고와 같이 공고한다)

5. 원서고부 및 접수

가. 기간: 77. 8. 8 ~ 8. 17.

나. 장소: 서울시 산업국 인포과

6. 제출서류 및 수수료

가. 수검원서(소검장부) 1부

나. 사진 3매 (3.5" x 4.5") 및 6월 이내 촬영한 발모 상판신, 동일
원판의 것)

다. 용서자공예 관한 증명서류 1부

라. 국가 기술자공예 제 18조의 규정에 의한 결거시일의 면적을 보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할 것.

(1) 결거시일 면적선정서 1부

(2) 주무부장관이 고부한 결거시일 장부 확인서 1부

(단, 76년도 서울시 시정 결거시일 장부라는 장부확인서 필요)

마. 수수료

(1) 결거시일: 500원 상당의 서울시 수입용기

(2) 결거시일: 결거시일 장부라에 관하여 5,600원 상당의 서울시
수입용기도 때도 납부하여야 한다.

7. 장부라 발표

가. 결거시일 장부라 발표: 77. 10. 17 (서울시정 우정 거시편)

나. 최종 장부라 발표: 77. 11. 15 (")

8. 기타 유의 사항

- 가. 수검원서는 수검종거 지점까지 한꺼번에 오고, 경수편 시용은 입혀 반환하지 않는다.
- 나. 수검자는 시험장입 후 신분등록을 한 수검표와 마찬가지로 관성여 필요 한 B 편편(결혼인감), 거주 기록 등편을 지참하고 09:30까지 지정권 확실히 취득하여 시험 출시권의 확인을 받을 것.
- 다. 휴대용 전자계산기 및 계산책은 시용하여도 무방 함.
-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시 산업국 연포과(75-7639, 7734)로 문의할 것.